

『인천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와 군·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보호와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요 공공시설물은 인천광역시와 군·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중 그 범위를 한정하여 지정함(안 제2조)
- 나. 포상금 지급대상은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로 하며, 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을 정함.(안 제3조·안 제4조)
- 다. 손괴자에 대한 신고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포상금 지급과 지급 한도를 규정함(안 제6조)
- 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시의회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032-440-6213,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보호와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
 2.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 ② 제1항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해야할 대상자가 서로 다른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시 소속 공무원 및 군·구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손괴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담당 공무원이 인지 또는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5. 공공시설물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시, 군·구와 타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5조(신고 및 처리) ①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손괴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포상금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월지급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환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제4조에 따른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제8조(신고자 보호)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해 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주요 공공시설물의 범위 (제2조 관련)

구 분	시 설 물
1. 도로	· 도로표지판 · 가로등 · 육교 · 자전거 보관대 · 맨홀(20m이상 도로중 시에서 설치한 시설)
2. 교통	· 교통신호기 · 교통안전표지판 · 시내버스·택시 유·무개 승강장 · 버스정보안내기
3. 공원	· 벤치 · 수목보호대 · 보호판 · 보호틀 · 음수대 · 공중화장실 · 체육시설물
4. 소방·안전관련 시설물	·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함) · 인명구조기구함
5. 위생 및 기타 시설물	· 휴지통 · 상징조형물
6.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	